

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의원형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20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10월 16일
발 의 자: 의원형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성준, 송도호, 신복자,
아이수루, 우형찬, 유정희,
이민옥, 이영실, 임종국,
정준호, 최기찬 의원(11명)

1. 제안이유

- 택시사업자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 원가부담 및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나, 결제 수수료의 지원 근거가 되던 조례의 유효기간 경과로, 현재 재정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.
- 이에 업계 부담이 이용 시민에게 전가될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다시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택시요금 10,000원 이하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 카드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4조)
- 나. 한시적 조례로써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(부칙안 제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택시이용승객이 교통카드,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일정 금액이하의 택시요금을 결제할 경우에 카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택시이용자 편의를 촉진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교통카드,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등(이하 “교통카드”라 한다)”이란 서울시가 지정하는 정산사업자와 카드사업자들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운영·관리되는 카드를 말한다.
2. “택시운송사업자”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택시면허를 받아 운행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만 적용한다.

제4조(카드 수수료 지원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택시요금 10,000원 이하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 카드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. 다만 택시운송사업자의 시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지원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외 범위 등의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택시운

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5조(부정사용 등)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부정사용해서는 아니되며, 시장은 부정사용 등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② 전 항의 구체적인 카드수수료 반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.

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(카드 수수료 지원)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☐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 -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(카드 수수료 지원)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
 - 담당부서(택시정책과) 문의 결과, 서울시에서 면허를 받고 운행 중인 택시(개인택시 제외) 전체를 대상으로 택시요금 10,000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 시 4,000,000천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지원범위 및 제외대상, 예산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 계 분 석 관 김지혜

☎ 02-2180-7953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